저작권(著作權)과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에 관한 법(2002/7)

#목차

정의(1-1)

제 1 절 보호범위 (2-4)

제 2 절 저작권(5-15)

제 3 절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범위 (16-19)

제 4 절 보호기간, 저작물이용허가 (20-24)

제 5 절 일부 저작물에 관한 법령 (25-29)

제 6 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협회의 관리 (30-33)

제 7 절 예방대책과 벌칙 (34-41)

제 8 절 일반법령과 부칙 (42-50)

정의(1-1)

제1조 본문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처: 정보문화부

장관: 정보문화부장관

저작물(著作物): 종류 및 표현방식 및 중요성 및 목적에 관계 없이 문학, 예술, 학문분야의 모든 창작물

저작자(著作者):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에 이름을 기재한 자 또는 해당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 판명된 자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로 본다. 또한 저작자의 확인에 대한 의심이 필요 없이 자신의 성명 또는 차명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을 배포한 자는 저작자로 본다. 단, 저작자의 확인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배포자 또는 저작물제작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 없이 권리이행에 있어 확인된 저작자의 대리인으로 보고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창의성: 저작자에게 주어진 독창성과 같은 창의적인 특성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국, 이 법에서 인정된 자

실연자: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와 이 법령에 따라 보호받거나 공공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문학 및 예술 및 기타 저작물에서 모든 방식으로 노래하거나 연주하거나 연기하는 모든 자

음반제작자: 최초로 1인의 실연자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녹음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방송국: 음 또는 영상 또는 음과 영상에 관하여 무선으로 방송하는 모든 기관

방송: 무선으로 대중에게 저작물 또는 실연 또는 음반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음성 또는 영상 또는 음성영상을 이용하여 방송하고 녹음하는 행위. 위성국 또는 인공위성을 통한 방송도 이에 포함된다.

배포: 방식에 관계 없이 저작물 또는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기타 실연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개실연: 극작품상연 또는 제공 또는 예술작품실연 또는 음성영상물전시 또는 음악저작물연주와 문학작품낭독과 같이 직접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행위

공중송신: 접근시기 또는 장소 또는 방식에 관계 없이 방송이 가능한 각 장소에서 저작물 또는 실연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중이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복제: 방식 또는 수단에 관계 없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전송 또는 저장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1개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실연을 복제하는 행위

음반: 방식 또는 도구에 관계 없이 특정실연을 위한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전환한 고정된 것.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음성영상저작물을 위한 영상과 음성을 첨부한 고정물도 이에 포함된다.

음성영상저작물제작자: 음성영상물완성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집단저작물: 자연인 또는 법인의 한 집단의 저작자들이 제작하고 자신의 명의로 관리 하에 그 배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저작물. 이 저작자들의 행위는 1인이 의도한 일반목적에 포함되며 각 저작자의 행위를 분류하고 구별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 각 지분의 분할가능성에 관계 없이 수인이 제작에 참여한

저작물

2차적저작물(2次的著作物): 번역물과 같이 이전에 존재한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 문학, 예술저작물과 구성 및 내용물선정 면에서 창작물이라고 간주되는 전통표현물도 이에 포함된다.

민속전통물: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알려진 저작자와 관계 없이 전통예술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한 요소를 갖춘 구전 또는 음악 또는 활동을 통하여 전해진 모든 민속전통물

공공재산: 초기에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재정권리보호기간이 경과한 모든 저작물

제1절 보호범위 (2-4)

제2조 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있어 국내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다음의 저작물에 한하여 이 법에서 지정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1)책, 문건, 논문, 기타 어문저작물

2)컴퓨터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정보문화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유사저작물

3)강의, 연설, 설교, 기타 유사저작물

4)연극저작물, 뮤지컬과 무언극저작물

5)가사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음악저작물

6)음성 또는 영상 또는 음성영상저작물

7)건축물, 그림, 건축물설계도저작물

8)선 또는 색이 포함된 그림, 조각, 석판인쇄, 직물인쇄, 목판인쇄, 금속인쇄저작물과 미술분야의 기타 유사저작물

9)사진저작물과 유사저작물

10)응용예술과 조형예술저작물

11)지도, 도표, 지형에 관한 3차원저작물 또는 건축설계도와 기타 설계도

12)원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2차적저작물

저작물의 제목도 창의적인 경우 보호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명시한 창의적인 생각(idea)도 이에 포함된다.

제3조 생각, 절차, 영업방식, 수학이론, 원칙, 단순한 사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창의적 표현에 대하여는 보호를 적용한다. 다음의 각 항은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1)본 목적 및 기재된 언어에 관계 없이 법령, 규정, 결정, 국제협약, 사법규정, 법원규정, 사법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과 같은 공문서

2)보도, 사건과 사실에 관한 뉴스, 단순한 언론뉴스

3)공공재산에 포함되는 저작물

그럼에도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그 구성 또는 그 내용이 창의적인 경우 보호받는다.

제4조 정보문화부는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위임 및 등록 또는 관할기관의 해당저작물처분에 대한 체계를

정한다. 정보문화부의 권리위임 및 등록에 관한 기록서는 저작물데이터의 자료로 본다. 저작물을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 보호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저작권(5-15)

제5조 저작자와 그의 상속인은 소멸 및 양도할 수 없는 저작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다음의 각 권리를 포함한다: 1)우선적으로 저작물배포를 결정할 권리
2)저작물과의 관련성에 관한 권리
3)저작물의 수정이 저작물을 왜곡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작물수정에 반대할 권리
4)중대한 사유발생 시 저작물의 유통을 중단시킬 권리. 이 권리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저작자는 중단판결시행이전 법원이 정한 기간에 유통을 통하여 재정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판결은 유효하다.

제6조 번역에 있어 수정은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번역자가 삭제 및 변경한 장소에 대한 기재를 해태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저작자와 그의 상속인 또는 저작권자는 컴퓨터 및 정보네트워크 및

통신네트워크 및 기타 방식을 이용한 저작물공개를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전송, 저장, 모든 방식 및 방송 및 재방송 및 실연 및 공개실연 및 번역 및 변경 및 수정 및 임대 및 대여 및 배포를 포함한 복제방식을 통한 모든 측면으로의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8조 컴퓨터프로그램자체가 임대물인 아닌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임대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음성영상저작물에 대하여도 임대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이 법에서 정한 자신의 재정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처분 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그 목적, 권리이용기간, 장소에 대하여 지정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저작물의 소유자로 본다. 이 법에서 명시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처분 시 권리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에 대한 재정적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지분에 따라 금전 및 현물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략의 금액에 대하여 상호합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 법의 제10조에 명시한 합의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합의 이후의 상황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명된 경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관할법원에 합의금액의 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이 법의 제9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관한 재산권이전은 지원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전송 또는 저장 시 컴퓨터 화면 하단에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시하거나 첨부된 상호합의허가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구매자 또는 이용자는 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형태로 처분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저작자에게 이에 대한 복제 또는 이전 또는 제시를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

제14조 유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재산권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배포 이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몰수할 수 없다. 단, 본래

소유자사망 이전에 배포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15조 저작자가 자신의 미래의 지적저작물 또는 5개 이상의 미래의 저작물을 처분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로 본다.

제3절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범위 (16-19)

제16조 실연자 또는 그의 공식적 상속인은 양도 또는 소멸될 수 없는 재산권을 가지며, 이들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권리를 허용한다: 1)직접 또는 녹음형태의 실연에 대한 권리

2)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실연의 변경 또는 왜곡 또는 훼손 또는 수정행위를 금지시킬 권리

정보문화부는 위탁형태로 저작자의 실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재산권을 이 법에 명시한 재산권보호기간경과 후 행할 수 있다.

제17조 실연자는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1)고정되지 아니한 그의 실연을 방송하고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2)그의 실연을 음반에 고정할 권리

3)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제3자가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실연을 녹음하거나 이를 대여하거나 방송하거나 모든

방식을 통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연자가 음성영상저작물의 일환으로 그의 실연을 고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18조 음반제작자는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1)그들의 허가 없이 모든 방식을 이용한 음반이용을 금지할 권리. 제3자의 음반복제 또는 대여 또는 방송 또는 재방송 또는 컴퓨터와 기타 방식을 통한 공개는 금지된 이용으로 본다.
2)유무선방식 및 컴퓨터와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음반을 배포할 권리

제19조 방송국은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1)그들의 방송기록과 프로그램이용을 허가할 권리
2)그들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대중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및 기록송신을 금지할 권리. 제3자가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복제하거나 그 기록을 복제하거나 대여하거나 재방송하거나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 이용으로 본다.

제4절 보호기간, 저작물이용허가 (20-24)

제20조 1)이 법에 명시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공동저작물의 수인의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모든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수인의 저작자 중 최후 1인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3)집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응용예술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최초로 배포한 후 50년간 지속된다.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 기간은 이 조의 제1항, 제2항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기산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 최초로 배포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초배포일자로부터 50년 경과 후 소멸한다.

4)저작자의 명의 없이 또는 차명으로 배포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초로 배포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알려진 자 또는 신원이 밝혀진 자인 경우 보호기간은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기산한다.

5)응용예술저작물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최초로 저작물을 배포한 일자로부터 25년 경과 후 소멸한다.

6)최초로 배포한 일자부터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제1의 배포일자는 재배포여부에 관계 없이 보호기간기산을 고려하여 채택한다. 이는, 재 배포 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새 저작물로 보고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저작물이 각 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각 부분은 보호기간기산 시 개별저작물로 본다.

7)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은 실연 후 50년간 존속한다.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된 경우 보호기간은 고정된 일자의 연말부터 기산한다.

8)음반제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음반배포 후 50년 간 또는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음반고정 후 50년간 존속한다.

9)방송국의 재산권은 최초로 프로그램의 방송 후 20년 간 존속한다.

제21조 모든 자는 정보문화부에 이 법령에 따라 보호하는 저작물의 복제 및 번역 및 2가지 행위에 대한 의무적인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번역허가의 경우 저작물배포일자로부터 3년 경과 후 그러하다. 허가는 저작물이용의 기간과 장소,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정한 결정에 따라 공표하며, 이 허가공표의 목적은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허가공표의 상황, 규정, 조건에 따라 오로지 모든 종류와 수준의 교육, 공공도서관의 필요를 충족하고 이곳에 저작물을 보관하는데 있다. 또한 이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하며,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비용을 정한다.

제22조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배포 후 제3자에게 다음의 행위이행을 금지할 수 없다: 1)영리 또는 업무상의 이용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행위.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계승자의 동의를 취득하여 공공장소에서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술 또는 응용예술저작물은 제외한다. 또한 이 조의 제7항에 명시한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저작물은 제외하며, 이 조의 제2항에 명시한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 제외한다.

2)합법적으로 보유한 지식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1회에 걸쳐 복제하고 인용하는 행위. 이는 허가 받은 목적 또는 원본의 분실 및 멸실 및 이용권한이 없는 경우 보관 및 구비를 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여분의 또는 추가로 취득한 복제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복제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보관 및 저장되어 있는 경우 원본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삭제한다.

3)사법절차 또는 판결 또는 이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4)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문서 및 문헌보관장소 또는 열람도서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저작물을 촬영하는 행위: ㄱ)원본의 보존 또는 분실 및 멸실 및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적절한 조건에 따라 그 대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원본을 대신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ㄴ)자연인의 학습 및 연구에 이용할 목적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1회에 걸쳐 각 기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의 법령에 따라 복제물에 대한 허가는 취득할 수 없다.

5)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비평 및 토론 및 보도를 목적으로 짧은 구절을 인용 또는 차용 또는 분석하는 행위

6)직접 또는 간접적 대가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회 또는 교육시설 내 학생들에게 저작물을 기증하는 행위

7)미술 또는 응용예술 또는 조형예술 또는 건축예술저작물을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행위. 단, 이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보존된 경우 그러하다.

8)문화 및 종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어문저작물 또는 음성 및 음성영상방식으로 기록된 저작물의 짧은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그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자의 성명과 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제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복제기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의 법령에 따라 복제물에 대한 허가는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 이 법의 법령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국을 통한 다음의 저작물의 복제물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1)합법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한 현재사건에 대한 영상 및 음성저작물 일부의 전송, 방송,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다.

2)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에 관한 토론에 대하여 배포된 기사. 단, 배포에 관한 금지조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다.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모든 경우 저작물에 대한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연설, 강연, 국무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공개회의와 공식회의 내 회견. 단, 이 연설, 강연, 회견이 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하다. 또한

뉴스보도를 위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은 복제물에 관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24조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재산권규제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절 일부 저작물에 관한 법령 (25-29)

제25조 수인이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여 각 참여자의 몫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참여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평하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이러한 경우 각 저작자는 저작자들 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단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다. 다양한 예술분야가 포함된 동일한 저작물에 모든 저작자가 참여한 경우 각 저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갖는다. 단, 나머지 저작자의 저작물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저작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중 1인이 공식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지분은 나머지 공동저작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제26조 집단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1)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음성영상저작물 또는 음성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본다: ㄱ)시나리오저작자

ㄴ)음성영상방식으로의 전환에 적절한 문학저작물을 저술한 자

ㄷ)대담저작자

ㄹ)저작물에 기여한 음악가

ㅁ)저작물완성을 실질적으로 감독한 감독

해당저작물이 이전의 다른 저작물로부터 고안된 경우 이전저작물의 저작자는 새 저작물의 참여자로 본다.

2)문학 또는 음악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저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관여한 부분을 배포할 수 있다.

3)음성영상 또는 음성 또는 영상저작물창작의 수인의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분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나머지 저작자의 자신의 완성부분에 대한 이용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이는 저작물을 완성하지 아니한 저작자의 창작참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4)합의한 음성영상 또는 음성 또는 영상저작물이용기간 동안 제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문학 또는 음악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물이용에 대한 합의 시 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28조 저작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차명이 기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법에 명시한 권리이행에 있어 해당저작물배포자의 대리자로 본다. 이는, 저작자가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그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의혹이 확실한 경우 그러하다.

제29조 건물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디자인, 설계, 도면이 불법으로 이용된 건축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건물을 훼손하거나 외관을 변경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며, 이는 이 건축저작자의 정당한 배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협회의 관리 (30-33)

제30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재산권관리를 위하여 이를 직업별저작권협회에 양도하거나 권리이행에 있어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협회 또는 기관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은 민사계약으로 본다.

제31조 이 법의 제30조에 명시한 협회 및 기관은 관리할 저작물이용에 대한 계약신청자 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차별로 협회 및 기관이 다음의 두 경우 낮은 재정적 대가로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허가결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실연자의 실연을 통하여

공식행사에 저작물을 이용

2)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교육 및 문화활동에서 저작물을 이용

제32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를 담당하는 협회 또는 기관은 정보문화부의 연례허가를 취득하여 활동한다. 정보문화부는 시행령에서 이 협회와 기관업무구성, 허가규정과 법규에 필요한 수정작업, 관련업무이행에 관한 규정을 수립한다. 또한 국무위원회결정에 따라 허가세를 정한다.

제33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를 담당하는 협회와 기관은 회원의 성명, 특성, 업무, 업무의 종류, 기간, 합의금액을 기재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기록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문화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회와 기관은 정보문화부에서 공표한 행정적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문화부는 이 협화 및 기관이 이 법의 법령과 그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소멸할 수 있다.

제7절 예방대책과 벌칙 (34-41)

제34조 1심법원장은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청원서에 대한 명령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경우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의 서면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배포 또는 공개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저작물에 대한 상세설명

2)저작물배포 및 공개 및 매매중단

3)원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압류 (서적, 사진, 그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 기타 저작물). 또한 이 저작물의 배포 또는 복제에 이용된 물품에 대한 압류. 이 물품은 저작물 재 배포에 유용한 물품에 한하여 압류한다.

4)대중에 대한 공연 또는 상연 또는 공개와 같은 공개실연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차후 공연을 금지

5)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배포 또는 공연으로 인한 수익취득을 금하고 모든 경우 이 수익을 압류

6)이 법령에 따라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여부를 확인

어떠한 경우라도 1심법원장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행조서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문가선임을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과한다. 요청자는 이 명령을 공표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해당논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효력은 소멸한다.

제35조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공표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명령을 공표한 법원장에게 이에 관하여 송사(訟事)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장은 명령을 지원하거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논쟁 시 저작물의 재 배포, 이용, 공연, 영리추구, 복제를 담당하는 감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의 행위로 인한 수익은 최종판결까지 법원금고에

위탁한다.

제36조 세관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 및 이들의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공표하여 이 법령을 위반하여 위조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최대 20일 간– 세관반출을 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은 반출금지요청에 관한 조건, 규정, 절차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요청자가 요청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일정금액을 정한다. 요청은 해당금액을 지급한 일자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관련결정의 공표 즉시 요청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관당국은 관계인에게 시행령이 정한 법규에 따른 세관반출금지물품에 대한 검사를 불허할 수 없다.

제37조 다른 법에 명시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서면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모든 자는 2월 이상의 구금과 10000디르함 이상 5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1)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실연 또는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컴퓨터 및 인터넷네트워크 및 정보네트워크 및 통신네트워크 및 기타 수단과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이 법에 명시된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의 저작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이 법령에 따라 보호하는 저작물 및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형태로

판매 및 대여 및 유통을 위하여 제시하는 행위
범죄발생 시 다양한 저작물 및 실연 및 프로그램 및 음반에 따라 이 조에 명시한 각 벌칙을 적용한다. 재범의 경우 6월 이상의 구금과 5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행위를 자행한 자는 3월 이상의 구금과 50000디르함 이상 5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해당권한 없이 위조된 저작물 및 복제물 또는 보호를 받기 위한 기기 및 수단 및 설비 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방송, 유통, 이 권리의 구성, 관리, 복제물의 본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판매 및 대여 및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 및 수입하는 행위
2)이 법에 따라 지정한 권리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전자정보의 보호를 해당권한 없이 방해 및 훼손하는 행위
3)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컴퓨터를 통하여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
재범의 경우 9월 이상의 구금과 200000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이 법의 제37조 법령을 제외하고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의 사전허가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모든 자는 각 컴퓨터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당 10000디르함 이상

3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범의 경우 3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사업장 또는 기타 시설의 이름으로 또는 이들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3월 이하의 기간 동안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이 법의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명시한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위조복제물의 몰수 및 파기를 명한다. 또한 범죄에 이용되고 범죄에 유용한 장비 및 도구의 몰수,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위조범죄가 발생한 사업장의 폐쇄,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매일신문에 유죄판결요약문의 게재를 명한다.

제41조 이 법에 명시한 벌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법령 및 규정 및 시행령을 위반한 모든 자는 6월 이하의 구금과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8절 일반법령과 부칙 (42-50)

제42조 저작자의 계승자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정보문화부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재산권을 이행한다. 또한 정보문화부는 저작자의 재산권보호기간이 경과 한 후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명시한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제43조 어떠한 형태로 타인을 촬영한 자는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진배포가 공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사진이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 및 공인에 관한 것이거나 공공당국이 대중의 편의를 위하여 배포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 촬영자의 허가 없이 사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 제시, 배포, 배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진의 제시와 및 유통으로 피 촬영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 촬영자는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촬영자가 허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신문과 기타 매체의 사진배포를 허락할 수 있다.

제44조 법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이 법의 법령은 외국인에 관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 통용하는 국제협약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제45조 법무부장관과 [1] Awquf 및 이슬람부장관은 정보문화부장관과 합의하여 이 법령시행감시담당직원들의 임명결정을 공표한다.

제46조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대한 비용을 정한다.

[1] 아랍어로 종교재산을 의미

제47조 정보문화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결정을 공표한다.

제48조 1992년 제40차 연방법과 이 법령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49조 이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통용하는 기타 시행령과 결정은 이 법의 시행령과 결정을 시행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50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